

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 개정대비표

1. 주요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비고												
<p>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 (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p> <p>(기재생략)</p> <p>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함에 있어 은행과 구매기업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 2 조(용어의 정의) (기재생략)</p> <p>제 3 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에 의한 대출취급방식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약정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취급방식(택 1)</th> <th style="width: 70%;">상품의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발주서방식 미래대출</td> <td>(기재생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td> <td>발주서방식과 같이 미래대출을 취급하되, 채권확정시에는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td> </tr> </tbody> </table>	취급방식(택 1)	상품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발주서방식 미래대출	(기재생략)	<input type="checkbox"/>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	발주서방식과 같이 미래대출을 취급하되, 채권확정시에는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p>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 (발주서방식 및 발주서전환방식)</p> <p>(현행과 같음)</p> <p>제 1 조(목적) 이 협약은 구매기업과 물품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협력기업의 원활한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 등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하여 「미래채권담보대출」을 지원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 2 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p> <p>제 3 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에 의한 대출취급방식을 다음과 같이 선택하여 약정합니다.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 표시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취급방식(택 1)</th> <th style="width: 70%;">상품의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발주서방식 미래대출</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td> <td>발주서방식과 같이 미래대출을 취급하되, 채권확정시에는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td> </tr> </tbody> </table>	취급방식(택 1)	상품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발주서방식 미래대출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	발주서방식과 같이 미래대출을 취급하되, 채권확정시에는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p>용어 수정</p>
취급방식(택 1)	상품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발주서방식 미래대출	(기재생략)													
<input type="checkbox"/>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	발주서방식과 같이 미래대출을 취급하되, 채권확정시에는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취급방식(택 1)	상품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발주서방식 미래대출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발주서전환방식 미래대출	발주서방식과 같이 미래대출을 취급하되, 채권확정시에는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대체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p>구매론 지급승인 등의 명세를 은행에 전송하여 매출채권을 확정하며, 은행은 별도 약정한 협력기업의 구매론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자동 실행하여 미래대출을 상환하고 대금지급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구매론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받는 방식의 대출</p>		<p>구매론 지급승인 등의 명세를 은행에 전송하여 매출채권을 확정하며, 은행은 별도 약정한 협력기업의 구매론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미래대출을 상환하고 대금지급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구매론 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상환받는 방식의 대출</p>	<p>용어 수정</p>
<p>제 4 조(협력기업의 추천 등)~제 6 조(발주서 제공 등) (기재생략)</p> <p>제 7 조(매출채권 확정 등) ①~③ (기재생략) ④ 발주서전환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하기로 하며, 협력기업의 해당 발주서 관련 미래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구매론 선입금을 실행하여 미래대출을 상환 하기로 합니다.</p> <p>제 8 조(채권양도) ①~② (기재생략) (신설)</p>		<p>제 4 조(협력기업의 추천 등)~제 6 조(발주서 제공 등) (현행과 같음)</p> <p>제 7 조(매출채권 확정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서전환방식 미래채권담보대출은 별도 약정한 바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하기로 하며, 협력기업의 해당 발주서 관련 미래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구매론 선입금을 실행하여 미래대출을 상환 하기로 합니다.</p> <p>제 8 조(채권양도 및 양도승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 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미래채권담보대출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보유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④ 구매기업은 매출채권양도통지 접수일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사실이</p>		<p>용어 수정</p> <p>양도담보 제한 계약에 대한 양도승낙 조건 추가 기재</p> <p>③→④ 항 체하</p>

③ 구매기업은 매출채권양도통지 접수일 이후부터 다음 각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또는 채권의 이종양도 통지 등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은행이 양도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매출채권 대금의 지급)

① 구매기업은 제 7 조에 의해 확정된 매출채권 명세에 대하여는 대금지급일의 은행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의 구매기업 명의 계좌로 매출채권 명세에 기재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에 개설된 구매기업 명의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② 은행은 입금된 대금을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③ 미래대출 상환 후 남은 매출채권 대금 및 미래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매출채권 대금은 전항의 방법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구매기업의 사정으로 통장예금자동대출계좌나 당좌대출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에는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또는 채권의 이종양도 통지 등이 발생한 경우
2. 기타 은행이 양도된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매출채권 대금의 지급)

① 구매기업은 제7조에 의해 확정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주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②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종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만기일이 도래된 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협력기업에 대한 미래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④ 미래대출 상환 후 남은 매출채권 대금 및 미래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매출채권 대금은 전항의 방법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

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

항 체상, 체하 및 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 상동

상동

<p>영업시간 중 매출채권 대금 결제로 인하여 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실행 및 이자징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p> <p>⑤ 구매기업이 제 1 항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p> <p>⑥ (기재생략)</p> <p>제 10 조(상환책임) ~제 11 조(시스템 운용) (기재생략)</p> <p>제 12 조(협약서의 효력)</p> <p>① (기재생략)</p> <p>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해당 만기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 (기재생략)</p> <p>제 13 조(기타사항)~제 15 조(특약사항) (기재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구매기업] _____ _____ (인)</p> <p>[은행] _____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인)</p>	<p>⑤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항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협력기업의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p> <p>⑥ (현행과 같음)</p> <p>제 10 조(상환책임) ~제 11 조(시스템 운용) (현행과 같음)</p> <p>제 12 조(협약서의 효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양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통지한 발주서에 대하여는 해당 매출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13 조(기타사항)~제 15 조(특약사항)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은행) _____ (구매기업) _____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 기업명 : _____ (인) 주소 : _____ 주소 : _____</p>	<p>상동</p> <p>문구 수정</p> <p>문구 수정</p>
--	---	-------------------------------------

2. 개정 시행일 : 2019년 5월 30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